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인천시립미술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 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시한) 위원회는 미술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건립업무의 업무담당자이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 마.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따라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